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10-18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 -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1구합51779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redacted]시장
변 론 종 결	2021. 7. 8.
판 결 선 고	2021. 8. 19.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0. 3. 6.자 취득세 관련 신고불성실가산세 58,81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3,670원, 2020. 3. 9.자 상속이전지연위반 과징금 38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환급한다.

이 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10-18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父) B은 2019. 7. 19. 사망하였고(이하 '망인'이라 한다), 이륜자동차((차량번호 1 생략), 이하 '이 사건 이륜자동차'라고 한다)와 자동차((차량번호 2 생략),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각 소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망인의 자(子)이고, 소외 C은 망인의 배우자(원고의 모)로서 각 망인의 상속인에 해당하는데, C은 2019. 10. 28. 이 사건 이륜자동차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다. 피고는 매월 초 소유자의 사망내역을 확인하여 2019. 12. 10.경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C에게[1] 이 사건 자동차의 '자동차세' 123,050원을 부과하고 이를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자동차세'라고 한다).

라. 한편 피고는 2020. 2. 27.경 C에게,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미신고할 경우 추징사유가 발생함을 이유로, 2020. 3. 9. 이 사건 차량의 '취득세' 507,830원(본세 420,140원, 무신고가산세 84,02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3,670원)이 과세될 것임을 예고통지 하였다.

마. 위 취득세와 관련하여 원고는 2020. 3. 6. 피고에게 납세자 C, 취득세 482,620원(본세 420,140원, 신고불성실가산세 58,81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3,670원)으로 된 고지서를 교부받고(이하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위 금액을 납부하였다.

바. 원고는 2020. 3. 9.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는데,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자동차관리법위반범칙금 납부고지서 겸 영수증'이란

1) 지방세법 제125조(납세의무자) ②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민법」 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10-18

제목 하에 '부과대상: 이 사건 자동차 상속이전지연(38일), 납부기한: 2020. 3. 24.까지, 과징금: 380,000원'으로 기재된 고지서를 교부하였고(이하 '이 사건 범칙금 부과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를 납부하였다.

사.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5. 29.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12. 15. 각하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2021. 3. 1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 을 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자동차세 부과 고지서에 자동차등록원부를 기준으로 한 명의자에게 부과된다는 기재가 있어서, 원고는 이 사건 이륜자동차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도 C 명의로 이전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이전등록이 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C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고, 또한 과세예고 통지서에 가산세가 일할 계산된다는 기재도 없어 납부하는 과정에서야 이를 알게 되어 일할 계산하여 일부 감면된 이 사건 취득세 금액을 납부하였으며, 동시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따라서 이 사건 취득세 및 범칙금 부과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

3.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이 사건 취득세 및 범칙금 부과처분 취소 부분)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원고가 아닌 C에 대한 것이므로 원고는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고, 이 사건 범칙금 부과처분은 범칙행위에 대한 통고처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10-18

에 해당하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 부분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제12조 전문), 여기에서의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행정처분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해당한다.

그리고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무효 확인 등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며,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이 생기는 경우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위 부과처분의 상대방은 원고가 아닌 C임이 명백하고, 원고가 위 C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실적·경제적 이익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그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범칙금 부과처분 부분

근거 법률이 행정소송 이외의 다른 절차에 의하여 불복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리고 과태료처분이나 통고처분에 의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비송사건절차법 또는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등이 정한 절차에 의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도로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10-18

통법 제118조에서 규정하는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에 대한 대법원 1995. 6. 29. 선고 95누467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처분의 고지서는 금액란에 '과징금'이란 표현이 있기는 하나 제목에 '범칙금'의 납부고지라는 점과 이 사건 자동차의 상속이전지연에 따른 자동차관리법위반에 의한 것임을 명시하고 있는 점, ② 자동차관리법에 의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범칙금납부통보서로 범칙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고(제85조, 제81조 제2호, 제86조), 범칙금 납부통고서에 불복하여 이의하는 자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검찰청 등에 사건을 송치하도록 하여(제88조 제2항 제4호) 법원의 심판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자동차관리법상 과징금은 업무 또는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거나, 일정한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법령을 위반하여 자동차나 일정 제품을 판매한 자 등에게 부과되는 것으로서(제74조), 이 사건은 위와 같은 과징금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부과처분은 자동차관리법 제86조 소정의 통고처분으로서, 이 역시 도로교통법상의 통고처분과 마찬가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취득세 및 범칙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4. 환급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행정소송법 제10조에 의한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은 본래의 취소소송이 적법할 것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10-18

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본래의 취소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면 그에 병합된 청구도 소송요건을 흠결한 부적합한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한다(대법원 1997. 3. 14. 선고 95누1370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의 이 부분 환급 청구는 이 사건 취득세 및 범칙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전제로 하는 것이나, 위와 같이 위 각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하는 이상, 그에 병합된 이 부분 청구 역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10-18

별지

관계 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이전등록) ①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이하 "이전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 등) ②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변경 사항이 있거나 이륜자동차 사용을 폐지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4조(과징금의 부과)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1조, 제45조의3제1항, 제47조제5항 또는 제66조제1항에 해당되어 해당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자동차검사대행자, 종합검사대행자,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 또는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업무 또는 사업정지처분(이하 "정지처분"이라 한다)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정지처분이 일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종합검사와 관련된 종합검사대행자의 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1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결함을 은폐, 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결함을 안 날부터 지체 없이 시정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 매출액의 100분의 2(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억원으로 한다)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30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판매한 자
2. 제30조의2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부품을 판매한 자
3. 삭제 <2020.2.4>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10-18

4. 삭제 <2020.2.4>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5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내압용기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내압용기를 판매한 자에게 그 내압용기 매출액의 100분의 1(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억원으로 한다)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 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제85조(통칙) ① 이 장에서 "범칙행위"란 제79조제13호(자동차정비업자가 제5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범위를 경미하게 위반하여 점검·정비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제81조제2호·제8호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뜻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이 장에서 "범칙자"란 범칙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뜻한다.

1. 범칙행위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사람
2. 도난자동차 또는 제34조를 위반한 자동차에 대하여 튜닝을 한 자동차정비업자
3.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제거하거나 차대번호를 훼손하여 자동차를 방치한 사람
4. 그 밖에 죄를 범한 동기, 수단 및 결과 등을 헤아려 통고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이 장에서 "범칙금"이란 범칙자가 제86조에 따라 통고처분을 한 시·군 또는 구의 금고에 내야 할 금전을 뜻한다.

제86조(통고처분) ① 시·도지사(제77조제4항에 따라 제12조의 이전등록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시·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이유를 명시한 범칙금납부통고서로 범칙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10-18

1. 성명 또는 주소가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
2.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기를 거부한 사람

제87조(범칙금의 납부) ① 제86조에 따라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은 10일 이내에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범칙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지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범칙금납부통고서에 불복하는 사람은 그 납부 기간 이내에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88조(통고처분의 효과) ① 제87조제1항에 따라 범칙금을 낸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 받지 아니한다.

② 사법경찰관리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지청에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2.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87조제1항에 따른 납부 기간 이내에 범칙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
4. 제87조제2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경우

■ 자동차등록령

제26조(이전등록 신청) ① 이전등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등록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1. 매매의 경우: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2. 증여의 경우: 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3.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4.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경우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② 등록관청은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제1항제3호에 따른 이전등록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수 있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1조(범칙행위의 범위 및 범칙금액) ①법 제85조제1항 및 법 제8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범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10-18

칙행위의 구체적인 범위와 범칙금액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표(제21조제1항관련)

3. 이전등록 신청 위반행위

(단위: 만원)

범 칙 행 위	해당법조문	범칙금액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가. 신청 지연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나. 신청 지연기간이 10일 초과 49일 이내인 경우 다. 신청 지연기간이 50일 이상인 경우	법 제81조제2호	 10 10만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50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01조 (신고사항의 변경신고) ①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중 이륜자동차의 사용본거지, 소유자의 성명(명칭)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거나 이륜자동차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65호서식의 이륜자동차신고사항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2004.11.29, 2010.2.18, 2014.2.28]

1. 이륜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변경되거나 소유자의 성명(명칭)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2.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가. 매매의 경우 : 매수한 날(잔금지급일)부터 15일이내
 나. 증여의 경우 : 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
 다. 상속의 경우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라. 기타의 경우 :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이내

■ 지방세법

제20조 (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10-18

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제125조 (납세의무자) ①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②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2. 연장자. 끝.

■ 행정소송법

제10조(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② 취소소송에는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관련청구소송을 병합하거나 피고외의 자를 상대로 한 관련청구소송을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끝.